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오현정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263호
- 다. 발의일자 : 2021.03.31
- 라. 회부일자 : 2021.04.06

### 2. 제 안 사 유

- 현재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시험비용과 재설치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시장이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시험하는 수도계량기의 경우 약 84%가 정상으로 판정되고 있고,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인해 만기 및 고장 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의 비용을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가. 수도계량기가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제38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험요청을 하여 시험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을 시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계량기 시험 비용 부담 주체 재정비(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현행 조례 제20조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여부 확인 시험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비용<sup>1)</sup>을 시(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고 있음.

제20조(계량기의 시험) ① 수도사용자들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시험 건수 3,827건 중 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여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수도계량기로 재설치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시험요청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1)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시험비용 +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 비용

<최근 3년간 이상 수도계량기 시험 실적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2020년		2019년		2018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시험 건수	계	3,827	100	1,264	100	1,337	100	1,226	100
	소형	3,437	89.8	1,154	91.3	1,176	88.0	1,107	90.3
	대형	390	10.2	110	8.7	161	12.0	119	9.7
정상	계	3,246	84.8	1,023	80.9	1,153	86.2	1,070	87.3
	소형	2,910	76.0	935	74.0	1,012	75.7	963	78.5
	대형	336	8.8	88	7.0	141	10.5	107	8.7
이상	계	581	15.2	241	19.1	184	13.8	156	12.7
	소형	527	13.8	219	17.3	164	12.3	144	11.7
	대형	54	1.4	22	1.7	20	1.5	12	1.0

- 특히, 구경 80mm 이상의 대형 수도계량기의 경우 폐전 철거나 만기 교체를 제외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 건수 1,512건 중 이상 시험에서 정상으로 판명되는 비율이 22.2%(336건)를 차지하는 등 2020년 단가 기준으로 1억 7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sup>2)</sup>이 소요되었고 특히 수도계량기 교체 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대형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구 분	합 계	폐전철거	만기교체	고장교체 (A)	검정시험 현황			고장대비 정상비율 (B/A)(%)
					검정시험	정상 (B)	이상	
2018년	1,860	60	1,280	520	119	107	12	20.6
2019년	2,020	51	1,277	692	161	141	20	20.4
2020년	2,116	50	1,766	300	110	88	22	29.3
합 계	5,996	161	4,323	1,512	390	336	54	22.2

2) 대형계량기 교체 비용 산출근거(단위: 건, 천원)

구 분	검정시험	검 정 결 과		'20년 평균구매단가	정상 수도계량기 환산 금액
		정상	이상		
계	390	336	54		175,376
80mm	192	166	26	335	55,577
100mm	82	74	8	446	32,989
150mm	75	65	10	743	48,282
200mm	30	21	9	833	17,489
250mm	9	8	1	2,038	16,306
300mm	2	2	0	2,367	4,734

- 한편, 이상 수도계량기의 시험 비용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지만, 서울수도 공업용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이상시험에 따른 비용 중 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한 바 있음.
- 따라서 다른 시·도 이상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비용 부담 현황,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개정 현황, 현행 규정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과 같이 수도계량기의 시험 비용 부담주체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제 5 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